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

일 시 : 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인사말** • 추혜선 국회의원
- 사 회**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발 제** •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신용정보법 개정안 평가”
- 토 론**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 허유경 금융전문 변호사
 -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 종합토론** • 참석자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

일시 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프로그램

| | |
|------|-------------------------|
| 인사말 | 추혜선 의원 정의당 |
| 사회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 발제 | 신용정보법 개정안 평가 |
| |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변호사 |
| 토론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 |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
| |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
| | 허유경 금융전문변호사 |
| |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
| 종합토론 | |

문의 : 추혜선 의원실 (02-788-2491), 윤철한 (경실련, 02-765-9731-2),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목 차

| | |
|-----------------------------------|------|
| 1. 인사말. 추혜선 국회의원 | / 1 |
| 2. 발제.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 / 5 |
| 3. 토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 21 |
| 4. 토론.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 / 33 |
| 5. 토론.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 / 59 |
| 6. 토론. 허유경 변호사 | / 65 |
| 7. 토론.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 / 75 |
| 8. 별첨.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방안 보도자료 | / 79 |



추혜선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함께 개최해주신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정부여당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을 발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고,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앞장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기반한 자료인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 또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 세간에 ‘내 개인정보들도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듯’ 이라거나,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화자됨을 주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 국민의 냉소적인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은 정보주체의 완벽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판매, 공유, 사생활 침해와 멀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상반기 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역임할 때부터 시민사회와 함께 개인정보 관리, 특히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정부가 간과하지 않도록 여러 번 지적하고 개선해 왔습니다. 하반기 정무위원회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금융권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공유로 인해 벌어진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 결과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유독 뼈아픈 피해로 파생됐다는 사실에 주목해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통해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비금융정보 신용평가에 SNS 게시물을 활용한다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광장의 표현의 자유가 탄생시킨 촛불정부는,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만큼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기본 철학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정보기본권에 대한 논의, 그리고 신용정보법의 영향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 명확히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의견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 논의되는 여러 고견을 귀담아듣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받지 않고 빅데이터산업 역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 환영의 말씀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사회를 맞아주시는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님과 발제자 김보라미 변호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님과 정보인권연구소 이은우 이사님,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님, 허유경 변호사님, 그리고 어려운 자리임에도 함께해주신 금융위원회 이한진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포함합니다. 고맙습니다.

발 제

| 발 제 |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신용정보법 개정안 평가 -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검토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
국회의원 추혜선 위원실 주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토론회

신용정보법 개정안 평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검토-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2017. 3. 22. UN 인권이사회 권고

2017. 3. 22. UN인권이사회 권고 : 동의 없는 [다목적 재판매]/ [공유] 에 대한 강한 예방과 구제대책 권고

정부에 대한 권고

- 개인의 자유롭고, 명시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판매되고, 다목적으로 재판매되며, 타 기업에 공유되는 피해에 대응하는 규제, 예방조치와 구제대책을 개발하고 유지할 것

기업에 대한 권고

-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유, 보관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 이용자에게 대한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를 적절히 허용하는 투명성과 정책 수립
- 명시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판매되고, 다목적으로 재판매되며, 타기업에 공유되는 피해에 대응하는 규제, 예방 조치와 구제대책을 개발하고 유지할 것.

2

창조경제공약과 개인정보보호 완화 정책

1. 2013. 12. 빅데이터 정책 & 가이드라인 발표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받지 아니한 활용정책발표] => 소셜 미디어상 개인정보 유통정책 (신용정보법안 제15조 제2항 제2호 "공개정보"에 대한 활용

*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된 사고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7409>

개인이 포털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사용자의 이메일부터 전화번호까지 개인정보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포털사이트에서 사고싶은 물건을 검색만 해도 이 프로그램을 쓰는 사업자가 광고문자나 전화, 이메일을 그것을 보고,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며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곳도 있습니다.

2. 2014년 1월 금융 개인정보 사고 보도

★KB 국민은행 약 4,000만건, 롯데카드와 농협카드 각 2,000만건 유출(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연봉, 결혼여부, 자동차소유여부, 신용한도, 등급정보 유출) : 우리나라 경제 인구의 약 75%가 피해자로 추정

→ 시민사회의 요구

- 오바마정부와 같은 금융소비자위원회를 만들어달라
- 금융지주회사의 개인정보공유제도에 대한 개정요구에 따라 계열회사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제한 및 개인신용정보강화를 위한 신용조회협의 부수업무 제한, 영리목적 검열금지(이번 개정안에서 다 풀림)

3

3. 2016. 6. 30. 범부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정보를 처리하는 자 입장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아님

KLT 모델을 기반으로 한 비식별화 조치 시행

전문기관을 통한 기업간 정보집합물 결합지원하나,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투명성 보장하지 아니함

★유일한 실증보고서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827485_22663.html

지난해 4월 작성된 개인정보 비식별 자료 실증 보고서입니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발주한 것으로 이른바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검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신용도와 관련된 전체 기록 791만 천 여건 가운데 숫자로 된 민감정보로 대조를 했더니 765만 6천여 건이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를 결합했을 때 96%는 식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동질그룹에 속하는 민감정보로는 99%까지 식별이 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비식별 조치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동의 없이도 활용 가능하도록 했지만 정보 결합에 따라 개인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1. 가명정보의 활용과 보호

- 가명정보는 ①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의 목적, ② [학술 연구 / 학술 및 연구]* 목적, ③ 통계 목적을 위하여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다. * [학술 연구 / 학술 및 연구] : 연구의 범위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참석자 일부는 '학술 연구'라는 표현을, 다른 일부는 '학술 및 연구'라는 표현을 지지
- 가명처리를 포함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등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
- [학술 연구 / 학술 및 연구] 목적에는 산업적 연구 목적이 포함될 수 있고, 통계 목적에는 상업적 목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
- 최초 수집목적과 양립되는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 허용 :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 등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여, 가명처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

2. 익명처리의 절차, 기준, 평가, 등

- 정부는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와 기준은 기술적 중립성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며, 강제적인 것이거나 최종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됨.
- 정부는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정보의 속성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이나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음.
 - *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은 현행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하의 전문기관을 지칭하는 것은 아님.

3. 데이터 결합 : 데이터 결합은 사회적 후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데이터 결합의 법적 구성방식들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비례하여 사전적 또는 사후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

4. 개인정보 보호 체계 : 통일적 규제 및 거버넌스 체계

전문 제26조

개인정보보호원칙은 식별되었거나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적용될 수 있다. **가명처리 정보는, 추가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신용정보법에서는 거의 익명처리처럼 설명되고 있음)** 어떤 개인이 식별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개인의 식별 등 처리자 또는 제3자 모두가 개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reasonably likely)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수단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별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 객관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처리당시 가용한 기술과 기술적 발전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익명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원칙은 식별되었거나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되지 않는 정보 또는 그런 방식으로 익명처리되어 더 이상 식별될 수 없는 정보주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은 통계목적 및 연구 목적 등을 위한 익명정보의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 제28조

개인정보에 가명처리를 적용하는 것은 관련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줄이고 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가명처리'를 도입하는 것이 기타의 개인정보 보호의 조치를 배제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다(신용정보법에서 왜 가명처리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하는가?)**

전문 제29조

개인정보의 처리 시 가명처리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명처리조치가 일반적 분석은 허용하되 **동종의 컨트롤러 사업체 내에서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이종산업간 정보결합허용규정)** 이 때 동종의 컨트롤러 사업체 내의 컨트롤러는 관련 처리에 대하여 본 규정이 이행되고 개인정보를 특정 정보주체에 연결시키는 추가 정보를 별도 보관하도록 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컨트롤러는 동종의 컨트롤러 사업체 내의 인가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전문 제156조

공익을 위한 유지보존의 목적, 과학이나 역사적 연구의 목적 또는 통계 목적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는 본 규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 같은 안전조치를 통해 특히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공익을 위한 유지보존의 목적, 과학이나 역사적 연구의 목적 또는 통계 목적에서의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등 적절한 안전조치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거나 더 이상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그 같은 목적을 충족시킬 가능성을 평가하였을 때 시행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공익을 위한 유지보존의 목적, 과학이나 역사적 연구의 목적 또는 통계 목적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특정 조건 하에서 정보주체를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에 따라, 정보의 요건에 관하고 공익을 위한 유지보존의 목적, 과학이나 역사적 연구의 목적 또는 통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수정·삭제할 권리, 잊힐 권리, 정보를 이전하고 반대할 권리에 관하여 세부사항 및 적용의 일부 제외를 규정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 같은 조건과 안전조치에는 정보주체가 상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특정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단, 이것이 비례성 및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의 기술·관리적 조치와 함께 특정 개인정보 처리로 구현되는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우에 그러하다.** 과학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도 임상 실험에 관한 것 등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전문 제159조

과학적 연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본 규정은 그 같은 정보처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본 규정의 취지를 위해,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는 기술의 발전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179조에 따라 European Research Area(ERA)를 유지보존하려는 유럽연합의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과학적 연구 목적에는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된 연구도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적 연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특수성에 부합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 목적에서의 개인정보의 발표나 다른 방식의 공개에 관한 것 등 특정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보건분야 등에서의 과학적 연구 결과가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한 추가적 조치의 사유를 제공하는 경우, 그 같은 조치를 고려하여 본 규정의 통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전문 제162조

통계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본 규정은 그 같은 정보처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은 본 규정의 한도 내에서 통계 내용, 접근(access) 통제, 통계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통계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통계목적은 통계 조사나 통계 결과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작업 일체를 의미한다. 그 통계 결과는 과학적 연구 목적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추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통계 목적에는 통계 목적으로의 정보처리 결과가 개인정보가 아닌 집합체데이터 (aggregate data)이며 이 결과나 개인정보가 다른 특정 개인에 관한 조치나 결정을 지지하는데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내포되어 있다.

제89조

1.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한 처리는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및 자유를 위해 본 규정에 따라 **적정한 안전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안전조치는 특히 **데이터 최소화 원칙**이 준수되도록 기술 및 관리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가명처리 방식으로 그러한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다면 가명처리가 포함될 수 있다. **개인정보주체의 식별을 허용하지 않거나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추가처리를 통해 그러한 목적들을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2. 개인정보가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이나 통계적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은 본 조 제1항의 조건 및 안전조치에 따라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권리의 적용을 일부 제외할 수 있다. **단, 그러한 권리가 그러한 특정 목적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손상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의 일부 제외가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전문 제39조

모든 개인정보처리는 합법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개인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 참고정보로 활용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사실,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그 정보가 처리되거나 처리될 것인지가 투명해야 한다.** 이러한 투명성 원칙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행하는 고지(information) 및 연락(communication) 일체가 용이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명확·평이한 언어로 행해져야 한다. 투명성 원칙은 정보처리자의 신원과 처리 목적에 대한 고지(information), 해당 개인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 통지(further information)와 처리되고 있는 정보에 대해 확인받고 연락받을 수 있는 개인의 권리(right to obtain confirmation and communication)를 포함한다. 개인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험성, 규정, 안전조치 및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받아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목적은 명백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당시에 결정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는 그 목적이 적절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만큼에 한하여 제한되어야만 한다. 특히 개인정보 보관기간은 최소한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여타 수단에 의해서는 합리적으로 성취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될 수 있다.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보관되지 않기 위해서 시간 한도를 설정해 두어야 하는데, 이를 통하여 정보처리자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주기적으로 확인(periodic review)할 수 있다. 부적절한 개인정보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를 보장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개인정보는 적절한 안정성(appropriate security)과 비밀(confidentiality)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 방식에는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전문 제50조

원래 수집 목적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는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가 원래의 수집 목적과 양립 가능한 (compatible)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목적이 양립 가능한 경우, 당초 정보수집을 허용한 법적 근거 이외의 별도의 법적 근거는 불필요하다. 공익을 추구하거나 컨트롤러에게 내재된 공적권한을 행사하여 시행되는 직무 이행에 처리가 필요한 경우,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은 추가 처리가 양립 가능하고 적법하다고 간주되는 직무 및 목적을 결정하여 명시할 수 있다. **공익상의 기록 보존 목적, 과학·역사 연구 목적 또는 통계 목적으로의 추가 처리는 양립 가능한 적법한 처리 작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이 규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는 추가 처리의 법적 근거도 될 수가 있다. **추가 처리의 목적이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양립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컨트롤러는 당초 처리의 적법성에 관한 모든 요건을 충족시킨 후 무엇보다 당초 수집목적과 추가 처리 목적 간의 연관성,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될 때의 상황, 특히 정보주체가 컨트롤러와의 관계를 토대로 추가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해당 개인정보의 성격, 예정된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결과, 당초 처리작업 및 추가 처리작업에 적절한 안전장치의 유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컨트롤러가 목적의 양립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정보주체가 동의하였거나, 둘째, 민주사회에서의 일반적 공익의 중요한 목표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이고 비례적인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는 유럽연합·회원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어떤 경우에서도 본 규정이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추가 처리 목적과 더불어 (처리) 반대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컨트롤러가 발생 가능한 범죄행위나 공안의 위협을 입증하고 동일한 범죄행위나 위협에 관한 개별 또는 복수의 사례에서 관련 개인정보를 관계 당국에 전송하는 것은 컨트롤러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정보처리가 법적, 직무상 또는 기타 구속력 있는 기밀유지의 의무와 양립가능하지 않은 경우, 컨트롤러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정보의 전송 및 추가 처리는 금지되어야 한다.

제6조

4.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처리하는 것이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제23조(1)의 목적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사회의 필요하고 비례적인 조치를 구성하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가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한 당초 목적과 양립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특히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

- (a) 수집 목적과 의도된 추가처리 목적 간의 연관성
- (b) 특히 개인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등의 개인정보가 수집된 상황
- (c) 특히 제9조에 따른 특정 범주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지 여부 또는 제10조에 따른 범죄경력 및 범죄행위와 관련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의 성격
- (d) 의도된 추가처리가 개인정보주체에 초래할 수 있는 결과
- (e) 암호처리나 가명처리 등 적절한 안전조치의 존재

제22조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 1.개인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 등, 본인에 관한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3.(생략)---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 최소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적 개입을 확보하고 본인의 관점을 피력하며 결정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제35조 개인정보영향평가

- (a) 프로파일링 등의 자동화된 처리에 근거한, 개인에 관한 개인적 측면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 평가에 근거한 결정이 해당 개인에게 법적 효력을 미치거나 이와 유사하게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b) 제9조(1)에 규정된 특정범주의 개인정보에 대한 대규모 처리나 제10조에 규정된 범죄경력 및 범죄 행위에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기타 등등

개정안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9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 9의3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1. 가명처리/ 익명정보는 신용정보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을 정하는 규정으므로 신용정보법에서 별도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 및 법정합성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가명처리의 양립가능성 인정 목적(공익목적 기록보존, 학술연구, 통계작성) 및 양립가능성 부분도 신용정보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 및 법정합성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실제로 **인재근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규정이 서로 다름**
- 2. 가명처리 규정과 양립가능성 조항을 도입할 경우 GDPR 및 GDPR의 입법례를 참조하기로 한 해커톤 합의에 따르면, "안전장치"를 도입하기로 되어 있으나, 활용에 대하여만 특례규정이 있을 뿐 GDPR이 활용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안전장치들, 프로파일링 규제 등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음

개정안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신용정보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2에서 같다)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신용정보회사 등 또는 그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조치 또는 익명조치가 된 상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1. 정보집합물규정은 신용정보법이 아니라, 신용정보법에 특화된 내용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신용정보법에서 별도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 및 법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위 17조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은 비식별화 가이드에서 제시하였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참여권, 투명성 등이 전혀 보장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더 나아가 익명조치로 처리할 수 있다면 익명조치로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을 위배하여, “가명조치”가 “익명조치”와 동일한 수준의 처리로 인정되고 있어 참조 입법례인 GDPR과 맞지 아니합니다.

개정안 제40조의2 (익명조치에 대한 행위규칙)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익명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심사하여 적정하게 익명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경우 더 이상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추정한다.

⑤ 금융위원회가 제3항의 심사 및 제4항의 인정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익명과 관련된 조항 역시 신용정보법에 특화된 내용이 아니므로 신용정보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신용정보법에서 별도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 및 법정합성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2. 위 40조의2항의 익명추정규정은 사실상의 면책조항으로, 과거 문제되었던 비식별화 가이드에서 제시하였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정보주체의 통제권 및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3. 가명조치 수준에 대한 인증이 아닌, 익명조치에 대한 추정은, 최근 법원이 해킹사건에서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할 경우 안전성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정보주체에 대하여 아무도 책임지지 아니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큼니다.

개정안 제15조

2. 공개정보

-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 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안 제32조

⑥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의5. 공개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 1. 공개정보와 관련된 조항 역시 신용정보법에 특화된 내용이 아니므로 신용정보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을 정하는 규정으므로 신용정보법에서 별도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 및 법정합성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 2. 위 조항은 창조경제로 추진되었던 공개정보의 활용과 다르지 아니하며, 정보주체의 통제권 및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 3. 최근 페이스북 캠프리지 스캔들과 관련된 영국 정보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상 정보 활용의 위험성이 글로벌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23조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국세기본법
- 8. 지방세기본법
- 9. 고용보험법
- 10. 산업재해보험법

- 1.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민감한 정보들(세금정보, 고용정보, 건강정보 등)을 민간기업인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공유하고, 해당 민간기업은 이중산업과 데이터 결합까지 가능한 전제하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조치, 즉, 개인정보주체의 참여권, 투명성 보장없이 그 위험성이 매우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개정안 제11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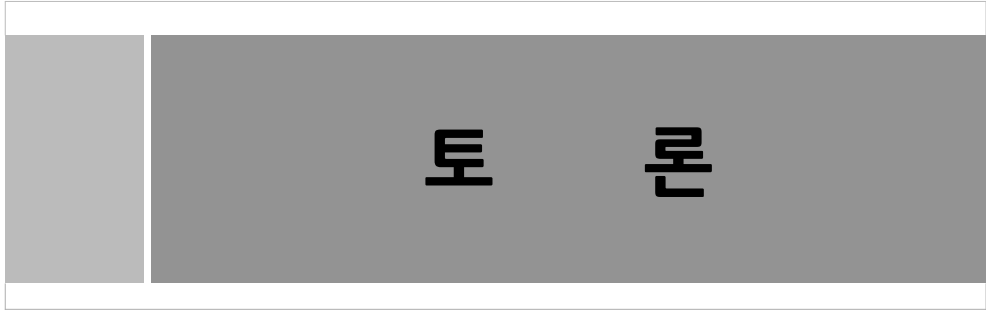
- ② 개인 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가명정보와 익명조치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 4.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5. 개인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무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현행신용정보법에서 아래조항 삭제

제22조의3(계열회사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제공금지)

- 1. 2014년 금융개인정보 해킹 사고로 계기로 개인신용정보보호강화의 필요성으로 신용조회업의 부수업무를 제한하고 영리목적 검업을 금지하였고,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규제완화시도조항
- 2. 2014년 금융개이정보 해킹 사고로 금융지주회사내 개인신용정보공유를 제한하였는데,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규제완화시도

감사합니다.



| 토 론 |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빅데이터 시대의 혁신성장!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우선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오늘날 산업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각종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들은 막대한 개인정보를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매개로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고, 기업들이 기대하는 바는 각 개인을 통해 발생하는 정보들(빅데이터)을 가공하여 마케팅이나 보안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빅데이터는 로그, 센서, 이미지 등을 포함해 블로그,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수많은 개인정보의 집합체다. 이 중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당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이용한 빅데이터 플랫폼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

이에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일일이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는 SNS정보 등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회사 등 기업이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가 악용될 위험성 고지와 그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은 채 시대에 뒤쳐져 있다며 혁신성장만을 강조하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위험성이 크다.

1.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개인정보유출 사태

□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2014년)

2014년 KB국민카드·농협카드·롯데카드의 고객정보 1억 건 이상이 협력사 직원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위 카드사와 FDS(신용카드부정사용방지시스템) 모델링 개발 용역 계약을 맺었던 KCB(코리아크레딧뷰로)의 직원 박모씨는 자신의 USB에 고객정보를 저장한 뒤 이를 팔아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외부로 유출하였고, 이후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 10만 여명의 피해자가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생각을 현실로 바꾸다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조회 서비스

NH농협카드 고객 개인정보 유출내역

> 유출 여부

다시 한번 NH농협카드를 믿고 사랑해주신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의 발표와 같이 저희 NH농협카드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카드의 비밀번호나 CVC값 등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2012년 10월 이후 관련 사고와
관계된 카드복제 등 이로 인한 피해접수사례가 단 한 것도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에 하나, 이번 사고에 따른 카드 위·변조 및 복제 등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저희 회사가 보상할 것입니다.

박원석 고객님의 유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기준일 2012년 10월 17일 이전 정보

| | | | | | | | | |
|------|------|-------|--------|--------|------|------|------|------|
| 성명 | 주민번호 | 휴대폰번호 | 지역전화번호 | 직장전화번호 | 지역주소 | 직장주소 | 직장정보 | 카드번호 |
| 유효기간 | 카드정보 | 결제정보 | 신용한도 | 연소득 | | | | |

NH농협카드 피해신고 및 민원 : 1644-4199 (24시간)
NH농협카드 고객행복센터 : 1644-4000 (24시간)

〈박원석 전 의원, 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내역〉

박원석 전 국회의원(정의당)의 경우 기본적인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카드번호, 카드정보, 신용한도, 연소득까지 중요한 정보까지 유출되었다. 신용카드 3사에서 이런 유형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비슷하게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없어,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개별 및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금융정의연대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소송 끝에 카드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손해가 입증되어 피해자들이 줄이어 일부 승소(법원 10만원 인정)를 하고 있지만,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난 지금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카드사의 도덕적 해이

당시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카드사들은 업무용 컴퓨터에 USB메모리 쓰기 기능을 제한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및 이용자정보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

②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사태수습 및 대책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다. 결국 일부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이후에야 손해배상 10만원을 겨우 받을 수 있었다. 금융소비자 피해는 피해 금액이 적고 피해자가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한 명이 구제결정을 받게 되면 관련 피해자 모두 배상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급명령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③ 법과 제도의 미비

현 제도는 소비자에게 피해입증책임이 있어 보상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한 피해자들만 보상받을 수 있고, 그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사가 책임을 느끼고 재발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집단소송제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카드사 등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할 경우, 그에 따른 강력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

□ 2014년 이후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

| 금융회사 | 유출시기 | 유출건수(건) | 유출원인 | 사후조치내용 |
|----------|--------------------|---------|--------|--|
| KG이니시스 | '12.6월~ '14.3월 | 5.5만건 | 외부해킹 | -기관 : 기관주의 -임직원 : 주의(2), 퇴직자위법사실통지(3) |
| KDB생명 | '14.4월 | 14건 | 시스템 취약 | -임직원 : 주의(2) |
| 메리츠화재 | '14.5월~ '15.2월 | 41건 | 외부해킹 |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5.4백만원 -임직원 : 퇴직자위법사실 통지(1) |
| JT친애저축은행 | '17.3월 | 26만건 | 내부직원 | -임직원 : 주의(2) |
| 유진투자선물 | '13.9월~ '16.10월 | 30만건 | 외부해킹 |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4천만원 -임직원 : 주의적 경고(1), 감봉 3월(1) |

〈자료출처 : 2018년 12월 금융감독원, 고용진 의원 답변 자료 중〉

카드3사 개인신용정보 유출 이후에 금융당국은 3개월 영업정지 등 당시 법·제도상 가장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JT친애저축은행과 유진투자선물의 경우 대량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내부직원이나 외부해킹에 의해 일어나는 등 개인신용정보 유출 방법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 맞도록 법과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금융 규제완화가 정보유출의 피해를 키운다

2008년 11월 당시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를 금융계열사에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2014년 카드사의 정보유출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규제 전수조사 및 민간규제 개혁심사단 심의를 통해 추가 규제개혁 사항을 발굴”했다고 밝혔고, 그 규제완화 방안에는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요건 완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금융기관이 회사의 분할·합병을 포함하여 고객 신용정보를 제휴 회사 등에 제공하기 위해 취득해야 했던 ‘본인 사전 동의’를 면제해주는 내용이였다. 결국 이후 2009년 4월, 계열사 간 신용정보의 유통 및 이용을 촉진하겠다는 이유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2011년 국민카드는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대거 이전받을 수 있었고, 당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의 정보도 이 과정에서 유출됐다. 규제완화로 인해 그 피해가 커진 것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대형 사고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3. 진화하는 보이스피싱·금감원 위에 날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2019. 3.17 KBS 뉴스 '대포통장' 대신 'P2P 계좌'..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돈을 빌려달라는 조카의 메시지에 5백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사기라는 생각에 20분 만에 은행으로 달려가 지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김○○/음성변조 : : "(조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 썼는데. 바로 또 돈을 회수해달라고 그래서. 급해서 그러니까 잠시만 빌려주면 3시간 후에 돌려주겠다.]"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사기범은 입금 5분 만에 돈을 찾아 달아났습니다.

범인이 이용한 계좌가 개인 간 금융, P2P업체에 연결된 계좌였기 때문입니다. 은행 등 금융권에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30분간 인출이 제한되는 지연 인출제가 있지만 대부업체로 분류된 P2P금융 연결 계좌는 여기에서 빠져있습니다.

이용된 계좌는 농협과 신한, 경남은행의 최소 14개, 피해자 50여 명에 범행 금액은 4억 6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P2P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피해자들이) 정체불명의 알 수가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돈을 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특정한(P2P)기업들이 어떻게 다 원천 차단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수법의 금융사기가 발생했는데도 금융당국은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음성변조 : "원인을 다 떠나서 결과만 들어왔기 때문에 P2P 업체인지 일반업체인지, 몇 명이 연루됐는지 이거는 자료로는 확인이 어려운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시중 은행 5곳이 계약을 맺고, 자금을 관리해주는 p2p 대출업체는 28곳에 달합니다 (KBS뉴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진화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대상자의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저지르는 맞춤형 보이스피싱이 등장하고 있고, 지연 제도를 피하기 위해 P2P 업체의 가상계좌로 송금하고 인출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였다.

4. 보호 장치도 없이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인 ‘가명정보’ 개념이 언급되어 있다. 이를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산업적 목적의 연구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개정안에는 기업이 이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남용을 막을 안전장치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CCTV 하나만을 보호하는데도 이에 대한 오남용이 넘쳐나고,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실명과 함께 수없이 유출되었다. 또한 사이버 피싱, 파밍 등 무수히 많은 개인정보 악용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단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도 미흡한 국가에서 빅데이터 시대를 앞세워 개인정보 활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지나치다. 또한 SNS 까지 신용도 판단에 활용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상업적 활용’이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의 공유를 허용한다면, 그 범위는 무한정 확대될 위험성이 높다.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는 정부의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해서 허가요건을 완화시키고 있는데 허가받은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소비자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용자 프로파일과 데이터 유출 위험에 놓여 있으며, 데이터 브로커들은 규제 및 입법기관과 소비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어 데이터 브로커를 통한 개인정보의 상품화도 우려된다. 따라서 가공된 개인정보의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시스템(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공되고 처리되는지 추적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필요하고, 무분별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은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

5.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하라

지난 2014년 발생한 개인신용정보의 대량 유출 사태로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크다. 하지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개인의 정보주권이라는 권리를 침해한다면 불신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금융위원회는 거대 금융회사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혁신성장’으로 포장하고 있어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정부가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으로 내놓은 신용정보 규제완화는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양성을 박탈하는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우리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국회를 포함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은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현재 ‘공개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제공하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규정은 프라이버시 및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혁신성장, 규제완화를 거론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재 해결되지 않은 정보유출 사태를 해결하고,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혁신성장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규제완화를 밀어 붙인다면 개인정보 피해의 대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먼저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 토 론 |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데이터 혁신’이라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평가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법무법인 지향

1. 요약

가. 그 동안 제기된 신용정보법의 문제점

-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의 난맥상과 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
-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비해 수 많은 특혜 조항을 담고 있음.
-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 보호는 소비자 보호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부실하고 부적절함.

나. 개정안의 문제점

- 제기되었던 문제는 거의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음
- 현재의 특혜 및 소비자 보호가 미비한 구조에서, 신용정보업자로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세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조치는 거의 아무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소셜미디어 개인정보 등 가장 핵심적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무력화
 -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음.
 - 다른 부문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맞지 않음.
- 가명조치를 통한 연구, 통계 목적 활용 범위의 지나친 확장
 - 무분별한 데이터 활용과 판매의 문호가 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함.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부합하지 않음.
- 데이터 결합 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구조임
-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라는 명목으로 도입된 제도는 부실함

다. 개정안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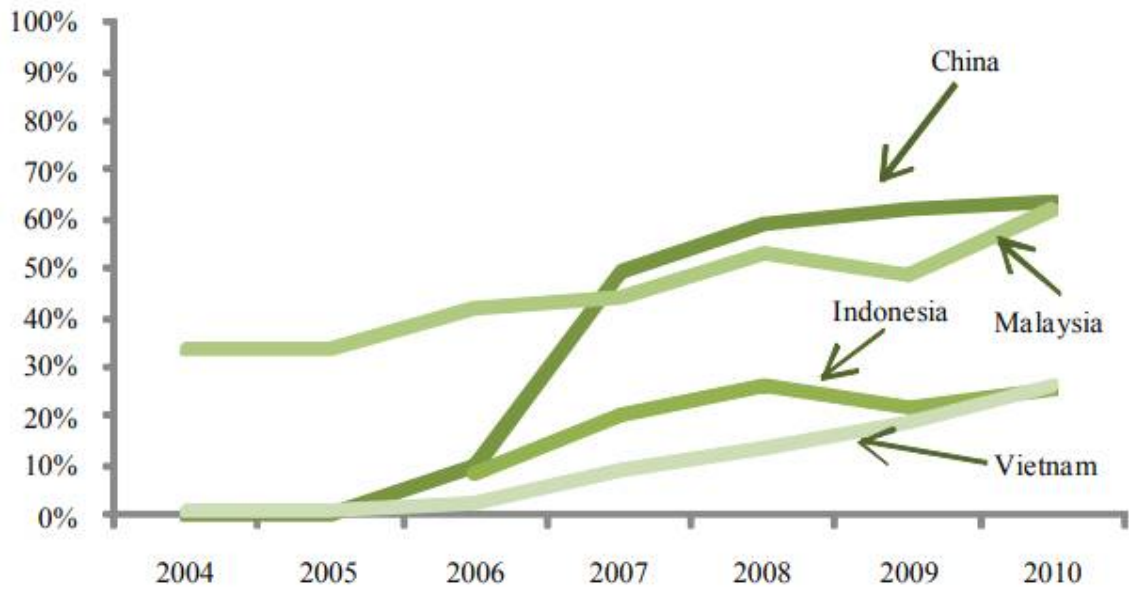
-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반소비자, 반경쟁적으로 약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될 것임.
- 금융소비자와 중소기업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임.
- 데이터 혁신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강화,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질 것임.

2.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신용정보 제도 : 공공적이지 않은 공공신용정보집중과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특혜

가. 공공 신용정보 등록제도(Public Credit Registry) vs 민간 신용정보사(Private Credit Bur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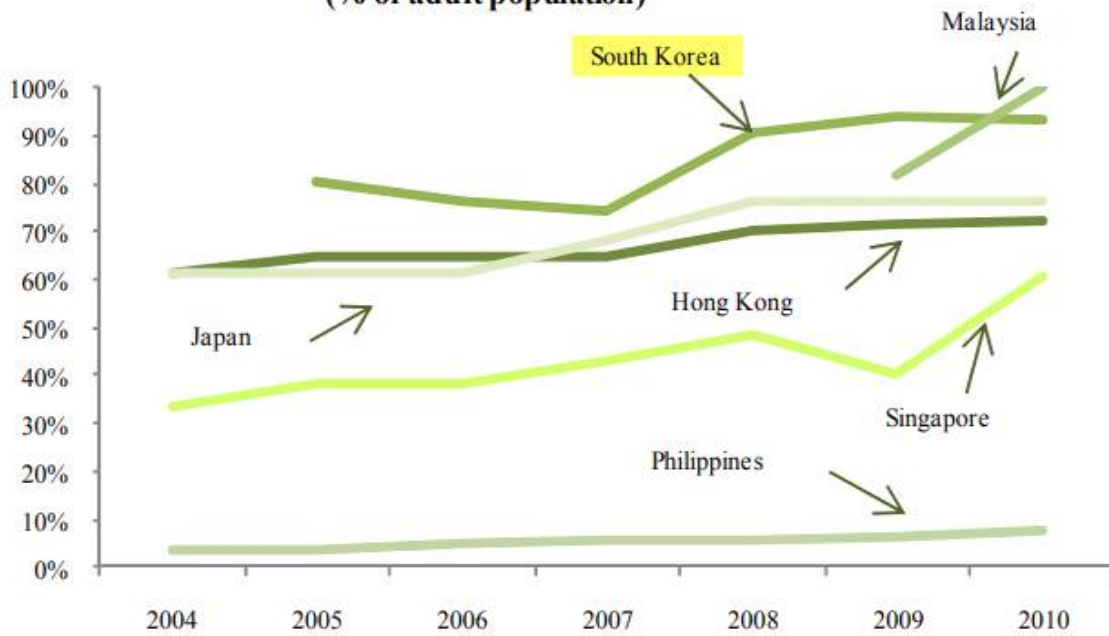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신용정보집중기관 : Public Credit Registry의 외피를 갖춘 민간
 - 법률에서 신용정보 집중을 법제화하고, 보장하고 있음.
 - 과연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 신용정보업 :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받는 특혜
 - 막대한 특혜와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불균형
 - 소비자의 권리는 거의 보장되지 않음.

**Figure 2: Public Credit Bureau Coverage
(% of adult population)**



Source: World Bank

**Figure 3: Private Credit Bureau Coverage
(% of adult population)**



Source: World Bank

Credit Bureaus in Asia¹⁾

나. 현재의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공유에 대한 포괄적 특혜

(1) 신용정보의 수집에 관한 특혜

가) 동의가 없어도 신용정보를 수집, 조사,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조사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특히, 개인신용정보는 당사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 규정을 광범위하게 해석함.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이를 다음과 같이 예시함.

1)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COUNTRY ANALYSIS UNIT, 2011. 10.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란?

- 계좌이체거래를 위해서 수신자의 계좌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 거래 체결과 관련 하여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평가를 위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단 계약 미 체결시에는 수집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 등

결국 당사자 동의 없이도 거래 체결과 관련하여 신용도 평가를 위한 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집중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될 수도 있음.

(2) 신용정보회사들끼리는 “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공유를 법률로서 허용함”(신용정보법 제32조의 예외)

가) 신용정보법 제32조를 무력화하는 제32조 예외 규정

-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동의 없이도 공유할 수 있음.
- 신용정보회사도 사실상 신용정보집중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형태임.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11.>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²⁾

2)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

나) 그 외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하는 광범위한 예외

- 채권추심을 위한 정보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음. : 반면 미국의 공정신용조사보고법(THE FAIR CREDIT REPORTING ACT)는 신용거래인 경우로 제한(permissible purpose 좁게 해석)
-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음.

다)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은행 등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법 제24조).

다.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에 대한 범위는 지나치게 넓다

(1) 현재의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의 활용범위는 매우 포괄적

-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
매우 포괄적인 표현
- 예외 규정으로 “정보주체가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및 광범위한 예외 사유3)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7.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반면, 미국의 Fair Credit Report Act는 목적을 엄격하게 규율함 (Permissible purposes)

- Permissible use가 열거되어 있음(Section 1681b. Permissible purposes of consumer reports)

- 신용 거래(a credit transaction)
- 고용 목적(employment purposes)
- 보험 인수(underwriting of insurance)
- 인허가와 정부 보조금 관련(license or other benefit)
- 신용 의무(credit obligation)를 지는 자의 신용이나 지불 위험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투자자나 서비스 제공자, 현재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자가 정보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 해당 정보에 대한 적법한 사업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i) 소비자가 청약한 사업상 거래와 관련한 정보, (ii) 해당 계좌의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3) 미국에서는 채권 추심을 위해서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고 함.

- 채무가 있어서 추심을 해야 하는 것으로는 허용되지 않음. “신용 거래”(Credit Transaction)와 관련된 경우이어야 함.(*Pigg v. Fair Collections & Outsourcing of New England, Inc.* (Case No. 16-cv-01902, U.S.D.C., Southern District of Indiana.)

- 임료를 내지 않은 것일 때에는 신용보고서(신용정보)를 받을 수 없음.
- The Court, however, agrees with the court in *Miller* that insofar as 15 U.S.C. § 1681b(a)(3)(A) is concerned, a credit transaction is a necessary prerequisite.

-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직접 신용을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되는 용도가 아니라고 봄.(*Baron v. Mark A. Kirkorsky, P.C.* (Case No. 17-cv-01118, U.S.D.C., District of Arizona).

- 의료기관에 등록된 계약(그 결과 등록료를 지급해야 함)은 신용 거래가 아니라고 봄.
- “Debt collection is a permissible reason for obtaining a credit report only insofar as the debt arose from a transaction in which the debtor voluntarily and directly sought credit.”

라. 신용정보의 사용에 대한 보호 - Adverse Action Notice

가. 미국의 경우

-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ECOA), Regulation B,
- 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

- 등에 의하여 규율됨

나. 미국과의 비교⁴⁾

- Adverse Action Notice 제도 : 의무 통지제도, 통지해야 할 요건도 엄격함.
- 사전 통지(Pre Adverse Action Notice)와 사후 통지

Table 1: When Adverse Action Notices Are Required

| Regulation B (Consumer and Business) | FCRA (Consumer) |
|--|--|
| <p>A creditor must provide notice if it has:^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ken adverse action on a completed credit application; • Taken adverse action on an incomplete credit application; • Taken adverse action on an existing credit account; or • Made a counteroffer to an application for credit and the applicant does not accept the counteroffer:^b <p>Notice is not required i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transaction does not involve credit; • A credit applicant accepts a counteroffer; • A credit applicant expressly withdraws an application; or • The creditor approves a credit application and both parties expect that the applicant will inquire about its status, but the applicant does not inquire within 30 days after application^c (the approved application is treated as withdrawn) | <p>For a covered transaction, a person must provide notice i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verse action was taken based in whole or in part on information in a consumer report^d; • Consumer credit is denied or a charge for credit increased based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third parties other than consumer reporting agencies bearing upon the consumer's creditworthiness, credit standing, credit capacity, character, general reputation, personal characteristics, or mode of living^e; or • Adverse action was taken based on information furnished by a corporate affiliate of the person taking the action⁵⁾ |

4) Adverse Action Notice Requirements Under the ECOA and the FCRA (Sarah Ammermann, Examiner,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를 참조함.
<https://consumercomplianceoutlook.org/2013/second-quarter/adverse-action-notice-requirements-under-ecoa-fcra/>

5) a 12 C.F.R. §1002.9(a)(1)

Table 2: Who Must Receive Adverse Action Notices

| Regulation B (Consumer and Business) | FCRA (Consumer) |
|--|--|
| Any applicant, including individuals applying for credit, businesses of all sizes, and any person liable or who will become liable for the debt such as a coapplicant. Guarantors are not “applicants” under Regulation B’s definition of applicant ^a | Any consumer defined as an individual, including coapplicants ^{b6)} |

Table 3: Timing Requirements for Adverse Action Notices

| Regulation B (Consumer and Business) | FCRA (Consumer) |
|--|---|
| A creditor must notify the applicant of adverse action within: ⁷⁾ | The FCRA does not have specific timing requirements for adverse action notices. |

- 30 days after receiving a complete credit application
- 30 days after receiving an incomplete credit application
- 30 days after taking action on an existing credit account

90 days after making a counteroffer to an application for credit if the applicant does not accept the counteroffer

Table 4: Content Requirements for Adverse Action Notices

b A creditor can provide a combined counteroffer and adverse action notice. The creditor would not have to send a separate adverse action notice if the counteroffer is not accepted. See Comment 9(a)(1)-6 of the Official Staff Commentary for Regulation B.

c 12 C.F.R. §1002.9(e)

d FCRA section 615(a)

e FCRA section 615(b)(1)

f FCRA section 615(b)(2)

6) a 12 C.F.R. §1002.2(e). See also 76 Fed. Reg. 41,590, 41,597(July 15, 2011)

b See section FCRA 603(c)

7) 12 C.F.R. §1002.9(a)(1).

| Regulation B (Consumer and Business) | FCRA (Consumer) |
|---|---|
| <p>Notice provided shall include the following disclosures:^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creditor’s name and address • An ECOA antidiscrimination notice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one in 12 C.F.R. §1002.9(b) (1) •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reditor’s primary regulator • A statement of action taken by the creditor • Either a statement of the specific reasons for the action taken or a disclosure of the applicant’s right to a statement of specific reasons and the nam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or office from which this information can be obtained | <p>Section 615(a) notice (adverse action based on information in a consumer report) must include the following disclosur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tice that adverse action was taken based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a consumer reporting agency • The consumer’s right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btain a free copy of his or her consumer report from the consumer reporting agency providing the information if requested within 60 days ◦ To dispute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any information in a consumer report furnished by the consumer reporting agency • The nam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f the consumer reporting agency that furnished the report to the person • A statement that the consumer reporting agency did not make the credit decision and is unable to provide to the consumer the specific reasons why the adverse action was taken • Credit score disclosures if the credit score was a factor in taking adverse action <p>Section 615(b)(1) notice (consumer credit denied or a charge for credit increased based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third parties other than consumer reporting agencies) must include the following disclosur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consumer’s right to request the information that was relied on in taking adverse action within 60 days of receipt of the adverse action notice; the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to the consumer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p>Section 615(b)(2) notice (taking adverse action based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an affiliate) must include the following disclosur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tice that adverse action was taken based on information from an affiliate and the consumer’s right to obtain the information by sending a written request within 60 days after receipt of the adverse action notice; the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within 30 days after receiving the request |

다. 반면, 우리나라는 형해화된 제도만 있음

- 요건 : 미국과 달리 상거래 거절, 중지만을 대상으로 함.
- 고지의무 : 미국과 달리 고지의무가 없고,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고지하도록 함.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 그나마 근거가 된 신용정보의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대폭 줄여 놓음

제31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 9. 11.>

1.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2.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신용정보. 이 경우 같은 호 마목, 사목, 카목, 타목 및 파목의 신용정보는 제외하며, 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체납 관련 정보만 해당하고, 같은 호 자목 및 차목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정보 및 이와 비슷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만 해당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서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9. 11.>

1.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2. 제1호의 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3.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다른 정보

마. FTC와 Data Broker : Spokeo 사건

- Spokeo는 공정신용조사보고법(THE FAIR CREDIT REPORTING ACT)의 적용 대상임.

- 최대한의 정보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절차를 갖추지 못함.

3. 개인신용평가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신설 규정은 심각한 위협을 초래함

가. 신용정보업, 신용정보회사의 범위 확장 : 특혜의 범위 확장, 규율이 미비한 상태임.

- 개인신용평가업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 기업신용조회업
- 신용조사업

나. 전문개인신용평가업 : 전기통신사업자(인터넷 정보), 통신사업자 정보 등과 이용내역 활용

- 개인신용평가업 중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신설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
-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
 - 전기통신사업자⁸⁾인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수집하거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생성한 거래내역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20억원
 - 그 외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8)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이들에게 부여되는 혜택 : 막대한 혜택

(1)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 수집, 처리 권한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15조 제1항)

(2) 개인신용정보도 동의 없는 처리가 가능

- 공개정보라는 명목의 정보(제15조 제2항)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를 수집하는 경우
 - 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 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 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개인신용정보의 공유(법안 제32조)

- 아래의 경우는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음
 -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공개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부수업무 : 가명정보, 익명정보 판매업 가능함

-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를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데이터 브로커.

-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가명정보나 익명조치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개인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신용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마.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규율도 미비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도입

- 심지어 미국의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권리는 우리나라보다 더 보호됨
- 신용정보업자로서 매우 폭 넓은 정보 공유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은 거의 없음.

- 제도 도입은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의 무분별한 데이터 판매와 활용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함.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관한 신설된 규정이 미비함

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제도 도입 : 미비함

- 설명 요구와 이의제기
- 이의제기에 대한 거절 사유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는 포괄적이며, 부적절함.

제36조의2(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평가의 방법으로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2. 개인신용평가의 주요 기준
3. 개인신용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정보”라 한다)의 개요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2.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나. 개인신용평점 등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③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의 절차 및 방법, 제3항의 거절의 통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차별배제 규정

- 차별 금지의 대상이 지나치게 좁게 규정됨(성별, 출신지역, 국적 등)
- 미국의 ECOA : 인종, 종교, 국적, 성별, 결혼여부, 연령, 사회보험 수급자
- 국가인권위원회법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은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평가 결과가 정확하고 그 평가체계가 공정한지 여부
2. 개인신용평가 과정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②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기업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정보의 생성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의4(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개인신용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출신지역, 국적 등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
2. 개인신용평가 모형을 만들 때 특정한 평가항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반영하는 행위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평점을 높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자동화평가에 대한 권리 : 형해화된 형식적 권리 도입

- 자동화평가에 대한 권리만을 규율하면서도 지나치게 협소함
- 자동화평가 만이 아니라,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율이 필요함.

- “자동화평가”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자동화평가에 대해서도 정보주체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연후에나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프로파일링에 대한 고지의무, 설명의무를 부과해야 함.

제36조의3(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의 결정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내용 결정

다.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화평가의 결과

나.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정보”라 한다)의 개요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나.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③ 제1항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제3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의 절차 및 방법, 제3항의 거절의 통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음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은 신뢰하기 어렵다.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운영

제26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둔다.

1.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2.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모형의 예측력, 안정성 등에 관한 심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의 제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미국의 신용, 금융에서의 차별 규제

가. 신용기회 균등법

(1) 차별금지사유

- 차별금지사유에 기반해서 신용 서비스로부터 배제, 차별하는 것을 신용기회균등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를 비롯한 차별금지법제⁹⁾에서 금지
- 다른 요인만 아니면 신용공여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 종교, 국적, 성별, 결혼여부, 연령, 사회보험 수급자라는 이유로 대출이 거부되거나, 대출금리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면 차별로 봄.

9)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the Fair Housing Act, the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등이다.

(2) 직접적인 차별과 차별적 효과 이론에 입각한 간접 차별

- 통계적으로 소수 인종에 대한 담보 대출 금리보다 비라틴 백인(no latin white) 신청자들의 담보 대출 금리가 상당히 낮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논거나 합법적인 사업상 필요를 설명할 수 없다면 차별로 봄
- 실제로 백인들보다 소수 인종의 소비자들이 차량 할부에서 차별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되었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간접 차별이 인정되어 거액의 배상이 이루어지기도 함
(Ford/Chrysler/GMAC/NMAC/Toyota Consumer Finance Discrimination Litigation).^{10) 11)}
- 신용점수는 신용대출, 취업, 전세 등은 물론, 사회, 경제적인 활동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신용점수가 낮게 평가되면 대출금리가 높아지거나, 대출이 거부되고, 취업이 거부되는 등 불이익한 대우를 받게 되므로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신용점수가 낮아진다면 위법한 차별로 볼 수 있음.
- 간접차별의 법리에 따라서 신용점수에 차별적 영향(Disparate Impact)이 작용한다면 역시 차별로 볼 것. 신용점수는 차별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적되고 있음.¹²⁾

나. 디지털 정보를 이용한 신용평가의 문제점

(1) 디지털 족적(Digital footage)을 신용점수화 하여 발생하는 문제

- 학력, 인종, 성별, 연령 등 차별금지 요소가 악용될 가능성
- 개인의 신용거래 실적이 아닌 통계적 특성이나, 예측에 따른 신용점수 산정의 문제.

10) U.S. Government Uses Race Test for \$80 Million in Payments
Checks are ready for minority borrowers allegedly discriminated against on Ally Financial auto loans By AnnaMaria Andriotis and Rachel Louise Ensign October 29, 2015
<https://www.wsj.com/articles/u-s-uses-race-test-to-decide-who-to-pay-in-ally-auto-loan-pact-1446111002?mod=grfx>

11) Using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to proxy for unidentified race and ethnicity A methodology and assessment

12) Carolyn Carter 등의 연구에 의하면 500,000명의 신용평가점수를 비교한 결과, 29%의 대상자가 3 신용정보업체의 신용점수가 50점 이상 차이가 난 사람이 29%에 달했다고 한다.(The Credit Card Market and Regulation: In Need of Repair, 10 N.C. BANKING INST. 23, 41 (2006).

- Hurley, M., & Adebayo, J. (2017)는 이와 같은 신용점수는 특히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

(2) 핀란드 차별금지과 평등 법원의 판단

- 2018년 3월 핀란드 차별금지과 평등 법원(National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Tribunal of Finland)
- 평등 및 차별금지 옴부즈만이 제기한 소송에서 신용평가업체가 신용점수를 매기면서, 차별금지사유인 젠더, 언어, 거주지, 나이 등을 신용점수 산정시 포함하고, 개인의 신용거래 실적이 아닌 차별금지사유가 포함된 통계적 평가(statistical assessment)로 신용도(creditworthiness)를 평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National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Tribunal of Finland, 2018. 3. 21.).

다.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에 대한 법적 대응

- 미국에서는 신용에서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브로커들이 소셜네트워크 정보를 통해 이름, 나이, 주소, 인종, 종교 등의 프로필 정보와 다양한 콘텐츠를 수집하여, 이를 고용 여부 판단에 활용하도록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신용조사보고법(The Fair Credit Reporting Act)의 절차 규정 준수나 이 유 고지 의무 위반 등으로 문제 삼음.
- 공정신용조사보고법은 신용조사보고서의 경우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보고서는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제공될 수 있고, 보고서를 근거로 부정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15 U.S.C. §§ 1681의 규정들), FTC는 데이터 브로커인 Spokeo Inc.,¹³⁾ Instant Checkmate¹⁴⁾ 등에 대해서 이를 위반한 것으로 제재함

13) United States v. Spokeo, Inc., No. 2-12-cv-05001-MMM-SH (C.D. Cal. June 12, 2012), <https://www.ftc.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ases/2012/06/120612spokeoorder.pdf>

14) Instant Checkmate, No. 3:14-cv-00675-H-JMA (S.D. Cal. Apr. 1, 2014), <https://www.ftc.gov/system/files/documents/cases/140409instantcheckmateorder.pdf>

- 이 정보에 입각해서 가격을 차등화(risk-based pricing)하거나, 신용, 주택, 고용, 보험 등을 거부할 때 신용정보 보고서에 입각하여 거부했음을 통지하고, 설명해야 함(불이익 처우 통지, 'adverse action notices')(15 U.S.C. § 1681m(a)).
- 고용의 경우는 이를 이용하려고 할 때 사전에 통지를 해야 한다("pre-adverse action notices").
- FTC는 신용조사보고를 이용하여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Time Warner Cable 등에 대하여 제재금을 부과.¹⁵⁾
- 공정신용조사보고법은 신용정보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 이외의 정보로 신용을 거부하거나, 높은 금리를 부과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615(b)).

6. 신용정보법과 EU GDPR Adequacy Decision :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규정들

가. 동의 없는 가명처리 정보의 활용 -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고,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을 훼손

- 현재 가명처리만 하면 제3자가 연구 목적, 통계 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공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없이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함.
- 제3자가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함.
- 연구는 '과학적 연구, 역사적 연구'에 해당해야 함.
-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함.

나. 동의 없는 가명처리 정보의 데이터 결합 활용 -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고,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을 훼손

- 현재 데이터 결합을 가명처리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허용함.
- 데이터 결합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유사한 입법

15) Time Warner Cable, No. 13-cv-8998 (S.D.N.Y. Dec. 20, 2013), <https://www.ftc.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ases/131219timewarnerstip.pdf>

례가 없음.

다. 민간 신용정보업자(Private Credit Bureau)에 대한 지나치게 넓은 개인신용 정보 공유 허용

- 현재 민간 신용정보업자에 대해서 신용정보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법률상 으로 공유를 허용하고 있음.
- 이는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함

라.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지나치게 제한적인 규정

-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자동화된 처리에 대해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전적으로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지 않음.
- 이의제기시에도 거절할 수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넓게 규정함.

| 토 론 |

신용정보법 개정안 토론문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신용정보법 개정안 평가 토론문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근 정부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입법적 대응 노력에 대하여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즉, 데이터경제 시대에 적합한 개정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개인정보 보호가 오히려 불충분해질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병존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어느 하나의 조문만을 바탕으로 그 보호의 정도를 논의해서는 안 되고, 전체 법체계와 조문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되는 개별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여야 그 개정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제한된 시간과 발표문의 부재로 부득이 발제문에서 제시할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인 검토와 의견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쟁점별 검토 의견은 토론회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 토론문에서는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략적인 의견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데이터 경제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불가피한 흐름이다. 데이터가 없이는 미래 혁신 경제도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인 점을 고려하면, 데이터를 경제에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문제는 혁신 경제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면, 첨단 정보통신기술은 데이터의 광범위한 결합과 유통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데이터에 포함된 수많은 개인정보는 긍정적인 목적을 위한 처리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목적으로의 처리에도 활용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미래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활용 못지 않게 보호도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을 가지더라도 구체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법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신용정보 혹은 금융정보의 속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신용정보는 그 민감성과 중요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한적인 범위의 생산자와 이용자만이 존재하도록 법제가 운용되어 왔고, 그 유통도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신용정보는 개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나 식별성 높은 정보로 구성되고 신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들이 결합되는 특성이 존재하지만, 제한적인 참여자와 엄격한 규제로 인해서 제한적 네트워크 내에서의 상대적으로 보다 유연한 활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특정 개인에 대한 정확성 덕분에 신용정보는 금융과 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었다.

신용정보의 개정을 둘러싸고 개인정보의 유통이 보다 확대되고 유연해지는 것과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혁신적 신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신용정보 기반의 서비스가 출현하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데이터에 대한 규율방식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 활용을 금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개인정보는 활용되어 온 것이고, IT기술과 네트워크의 발달에 따라 그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어 법적인 규율이 강화되어 온 것이다. 미래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도 강조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데이터 활용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 원칙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측면에서의 규율은 기본적으로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법제도를 발전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이 발전하게 사회가 발전할수록 데이터의 유형, 양과 규모, 성질 등에 따라 세밀한 규제가 필요해질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라고 하여 무조건 활용과 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용정보에 대하여도 동일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신용정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다만 신용정보의 민감성과 정확성 등의 특성을 기초로 한 차별화된 규율 수준과 방식을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용정보의 활용과 유통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의 신용정보에 특유한 규제방식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신용정보의 활용과 유통에 있어서의 제한적·폐쇄적 네트워크 내의 규율이 완화된다면, 일반 개인정보에 대한 규율방식의 수용은 불가피하고 신용정보에 대한 독자적인 규율체계 강화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일반법적 규율방식과의 융화 혹은 단일화를 점차 수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립해야 할 것이다. 신용정보법의 독자적인 규율방식에서 탈피하여 신용정보의 유통이 확대되는 만큼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가능성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의 적용상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수범자의 혼란을 없앨 필요가 있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은 데이터 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정립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토 론 |

신용정보법 개정안 토론문

허유경

변호사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평가 토론문

허유경 변호사

1. GDPR의 시행 및 EC의 적정성 평가

2018. 5. 25.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시행되면서 EU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상대국의 보호수준이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해당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이 허용되었는바, 이러한 보호수준의 판단을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추진해왔으나, 2016년 10월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적격성 미비를 이유로 ‘평가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부분 적정성 평가’를 추진했지만, 이 또한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 보호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적정성 평가를 재추진하고 있는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우리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3대 축 중의 하나입니다. 나아가, 신용정보법 개정안¹⁶⁾은 비금융정보에 기초한 개인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신용정보법이 금융정보를 주로 규율하던 것과 달리,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가 전기·가스 요금 납부, 온라인 쇼핑 내역, 사회관계망 정보 등 비금융정보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를 활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금융정보는 금융정보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합니다.

신용정보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EU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때 개인정보법과 함께 개정된 신용정보법의 조문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EU의 GDPR과 상충되는 내용이 존재하므로,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을 보완·수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의 적정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2. 공개된 정보의 수집 등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⑥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의5. 공개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등이 ①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② “공개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에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정보주체가 사회관계망에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가 해당 정보를 동의 없이 무제한으로 수집·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GDPR의 정신과 내용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GDPR은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통제권을 돌려주는 것을 핵심적인 목표로 합니다. 이에 GDPR 시행 이후, 많은 해외 기업들은 사회관계망의 정보를 마케팅에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GDPR이 요구하는 수준의 명확하고 엄격한 동의를 얻고 한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GDPR에 상충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GDPR의 정신과 규정에 역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제3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 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2011년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CNIL)의 결정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회사 측은 “정보주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할 내용과 비공개할 내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공개’ 정보로 두었다는 것은 이를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CNIL은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사회관계망에 게시한 내용을 제3자가 수집·집중·재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CNIL은 정보주체가 주로 어린 나이(미성년자)에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처음 가입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입 당시에 ‘이후 수많은 공적·사적 기관이 사회관계망에 게시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을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활용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정보는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丙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에 관한 것인 바¹⁷⁾, 이는 공적인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공립대학교인 乙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丙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위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사안)

그러나 사회관계망 등에는 다양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개인정보의 수집·제공·활용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다만 ① 공적인 지위에서 공개된 개인정보(공적인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와 ② 사적인 지위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는 취급을 달리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¹⁸⁾ 따라서 ‘공적인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을 공·사의 영역이 혼재된 사회관계망의 모든 정보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Lenddo의 사업모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 새로이 도입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은 싱가포르의 Lenddo ELF(“렌도”)와 같은 대안적 신용평가사를 모델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렌도社도 고객의 동의를 얻어 정보수집을 하는 것을 기본적인 사업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즉, 렌도社는 고객의 동의하에 고객의 모바일 기기(핸드폰)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에 1회 접속하여 핸드폰 등에 저장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용도를 평가하는 모델입니다. 렌도社가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에는 고객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 생년월일, 성별, 고용상태, 학력, 사진, 위치정보, 웹사이트 방문이력, 핸드폰 단말기에 관한 사항(모델명, OS, 기기의 고유번호, 단말기에 저장된 통신기록, 전화기록, 문자메세지 기록, 기타 검색기록)등이 포함됩니다. 고객이 단말기 등을 통하여 직접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도 제3자인 전자상거래업체, 전기·수도·가스와 같이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회사, Linkedin, Twitter, Facebook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 Gmail, Yahoo, Outlook과 같은 이메일 계정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렌도社가 수집하는 정보에 포함됩니다. (첨부 1 약관 관련 조항 참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렌도社가 수집하는 정보의 양은 방대하지만, **고객의 명시적인**

18) 유럽재판소와 프랑스의 정보보호감독기구 등에서 공적인 지위에서의 정보와 사적인 지위에서의 정보를 나누어서 본 선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개된 사회관계망의 정보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Cojesta 판결에서 공적인 지위와 사적인 지위에서의 정보를 나누어 본 사례가 있고, 유럽 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법리에서도 민주적 사회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인의 프라이버시권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의하에 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들면 고객은 특정 사회관계망서비스, 특정 단말기 기록 선택하여 정보수집에 포함시키거나 제외 할 수도 있어 본인의 명확한 동의하에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렌도社の 사업모델은 개인정보보호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의 제공,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렌도社の 원래 사업모델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렌도社の 사업모델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①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의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공개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제공·활용 등이 가능합니다(신용정보법 개정안 제15조 제2항 다목, 제32조 제6항 제9의5호). 그 밖에 동 개정법안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의 동의 요건에 대한 폭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¹⁹⁾ 이러한 점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예정하고 있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은 “고객 동의”를 기본 전제로 정보수집을 하는 렌도社の 원래 사업모델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렌도社에 대해서도, 고객이 아닌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 예

19)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32조 제6항 제9의2호.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32조 제6항 제9의3호.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32조 제6항 제9의4호.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요건에 폭넓은 예외를 두고 있는 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관련 규정은 GDPR에서 동의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는 “Article 29 Working Party Guidelines on consent under Regulation 2016/679”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n compatibility of purposes, consent must be specific to the purpose. Data subjects will give their consent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y are in control and their data will only be processed for those specified purposes. If a controller processes data based on consent and wishes to process the data for another purpose, too, that controller needs to seek additional consent for this other purpose unless there is another lawful basis which better reflects the situation. [Example 11] A cable TV network collects subscribers’ personal data, based on their consent, to present them with personal suggestions for new movies they might be interested in based on their viewing habits. After a while, the TV network decides it would like to enable third parties to send (or display) targeted advertising on the basis of the subscriber’s viewing habits. Given this new purpose, new consent is needed.”

를 들면 고객이 아닌 사람들의 그림자 프로파일(“shadow profiles”)을 만들고 있는지, 현재의 알고리즘 및 분석기술이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함.)

②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은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때문에 렌도社와 같은 대안적인 신용평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신용자 또는 신용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신용공여를 받기 위하여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역설적으로 저신용자, 신용이력이 없는 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대안적인 신용평가모델은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가에 주로 보급되어 있습니다.²⁰⁾ 이런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디지털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인적·물적인 네트워크는 매우 조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의 경우에는 약 4200만-4300만명의 가입자²¹⁾를 두고 있어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동일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주체 한명이 그 동의하에 대안적 신용평가를 받을 경우, (동의를 하지 않은)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초연결사회에서 사회관계망정보를 포함한 신용정보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대안적인 신용평가업을 허용하였을 경우에, 그 파급 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 및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 Mexico, Brazil, Colombia, Peru, South Africa, Kenya, Nigeria, Jordan, Mongolia, South Korea, Thailand, Philippines, Indonesia, and India (2016)

21) 파이낸셜뉴스, 2018.08.31., “4300만명 카톡 가입자, 멜론 듣는다,” 이데일리, 2016.5.31. “4200만 네이버 이용자 ‘강점’..네이버페이”

[첨부 1 렌도社의 약관]

<https://lenddo.com/legal/en-US/privacy.html> (2019. 3. 19. 최종방문)

Privacy Policy

INTRODUCTION

Lenddo Pte. Ltd. and/or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are committed to protecting and respecting your privacy.

[중략]

WHAT INFORMATION IS COLLECTED?

The information that we receive and collect about you is information that is required for the purposes of our Services, this may include any of the following depending on the nature of your use of our Services and the details of the consent that you have provided to us: your name, email address, phone number, any other contact details, government or other identity documents, date of birth, gender, employment, educational background, **pictures, location, weblogs, device-specific data** (such as your hardware model, operating system version, unique device identifiers, other communication data (which may include information stored on your device, like **contact lists, call logs, SMS logs, or other digital content and browser data**), details of your use of our Services and a record of your consent to our collection of such information. Your Information that is collected may include information that is considered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relevant privacy laws in your jurisdiction.

Your Information may be collected from a number of different sources, which is explained further in the "*How Is Information Collected*" section below.

[중략]

HOW IS INFORMATION COLLECTED?

We receive information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i) through your use of our Services, including any interactions that you have with us related to the Services; (ii) from our Clients; and (iii) from Third Parties with whom we contract to perform business functions and services on our behalf.

We use a wide variety of data sources (either ourselves or through our arrangements with Clients or Third Parties) to perform our Services and depending on the consent that you provide the types of data source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information: (i) you give us, such as when you submit an application form or when you complete a psychometric test ii) from credit bureaus, credit reference agencies, credit registers, or other third parties, such as e-commerce companies or utility companies iii) from social networks, such as LinkedIn, Twitter or Facebook; (iv) from email, such as Gmail, Yahoo or Outlook; (v) from your device or browser.

For example, if you access our Services from one of our Client's websites as part of a loan application, you may be prompted to provide us with information as part of the application

process and you may be asked to authorize us to access Your Information from Third Parties, such as your credit history from the credit bureaus, employment information from your employer, or your social media account information from the applicable social media platforms. Once you have authorized us to access Your Information, we collect such information about you in accordance with the authorization that you have provided. As part of this authorization process, you have the right to select which Third Parties we can access to obtain Your Information.

When you use the Services, and provide your authorization (as explained in the example above), you are consenting to our use of Your Information as described in this Privacy Policy.

We may record conversations between us and you. These recorded conversations can be used by us for internal or otherwise, legitimate purposes related to the interaction. You give full consent for us to make such recordings and will not hold us responsible in any way for any possible infringement of the law relating to 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렌도社 관련 인터뷰 기사]

**“It’s all about who you know: Lenddo makes credit decisions based on your social network”
2016.8. 11.**

(<https://rctom.hbs.org/submission/its-all-about-who-you-know-lenddo-makes-credit-decisions-based-on-your-social-network/> 2019. 3 19. 최종방문)

Lenddo developed an algorithm that aggregates data from social media accounts – friends, frequency of interaction, interests, etc. – and other smartphone applications – messaging and browser history, apps, wifi network use, battery levels, etc. – to establish a rating that signals an individual’s likelihood of repaying or defaulting on loans.^{5,6} This “LenddoScore” is a number ranging from 0 to 1,000, and is said to be a measure of trustworthiness, enabling lending via social networking alone instead of age-old credit score metrics.⁷ The algorithm has been developed and is maintained by mapping relationships between more than 120 social media profiles on Facebook, Email, LinkedIn, Twitter, and Yahoo. Additionally, Lenddo also asks members to select a “Trusted Network” of at least three people. If the borrower fails to pay back the loan, Lenddo scores of their network will also suffer. This additional layer incentivizes friends and family to keep the borrower accountable, as a lower score could affect the chances of being approved for a loan in the future.

| 토 론 |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장

신용정보법 개정안 평가 -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검토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장

| 별 첨 |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보도

2018.11.22.(목) 조간

배포

2018.11.21.(수)

| | | | |
|-------|--|-------|--|
| 책 임 자 |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이 한 진(02-2100-2620) | 담 당 자 | 송 현 지 사무관 (02-2100-2621) 주 민 석 사무관 (02-2100-2623) |
| |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평가실장 권 민 수(02-3145-7850) | | 신용정보1팀장 김 재 호(02-3145-7830) |
| | 신용정보원 신용정보부장 심 현 섭(02-3705-5910) 정보분석부장 이 동 렬(02-3705-5866) | | 신용정보기획팀장 조 만 식(02-3705-5917) 정보분석팀장 이 재 근(02-3705-5867) |

제 목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 ◆ 자영업자의 실시간 카드매출정보 등을 분석하여 663만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CB사)」가 도입되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이 담보·보증 없이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공공요금 납부정보, 온라인 쇼핑 정보, SNS 정보 등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CB사)」가 도입되어 1,107만명에 달하는 주부, 사회초년생 등 금융이력부족자들의 신용평점이 개선됩니다.
- ◆ 높은 진입규제로 역동성이 부족한 신용정보산업의 진입규제를 업무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 ◆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충하고, 신용정보원을 데이터전문기관이자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여 신용정보 산업의 인프라를 정비하겠습니다.

1 추진배경

- 정부는 그동안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음

- 대통령 주재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토론회(1.22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현장방문(8.31일)」 등 개최
- 데이터 정책 관계부처*간에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 공통의 “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 (8.31일 보도자료 참고)

*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 등을 통해 학계·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 및 시민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반영

-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의 혜택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추가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음

<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과제 >

- ❶ **개인신용평가 체계 종합개선방안** (1월) : 신용점수제 도입, 평가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 등 강화, 평가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설명요구권 등 도입
- ❷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3월) : 3대 추진전략(빅데이터 활성화/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정보보호 내실화) 10개 과제 발표
- ❸ **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5월) :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구체화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 도입 등)
- ❹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방안** (7월) :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구체적 도입방안 마련

2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 금번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은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대표적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인 신용정보산업을 선진화하여
 -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

- ❶ 마이데이터 산업, 비금융전문 개인 신용평가사(Credit Bureau : CB), 개인사업자CB 등 새로운 Player 출현을 위해 진입규제 정비
- ❷ CB산업을 고부가가치 데이터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CB사에 데이터 관련 업무(빅데이터 분석·컨설팅 등)가 가능하도록 함
- ❸ CB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고, 개인신용평가의 정확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구조·영업행위 규제 등을 강화
- ❹ 신용정보원을 통한 금융권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 등 신정원 기능을 확충하여 산업 인프라 선진화

※ 상세방안 : 별첨 본문 참고

3 향후 추진계획

- 금번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은 여타 데이터 규제혁신방안과 함께 '11.15일 기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음
 -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는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들이 금융 분야 데이터 규제혁신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또는 법 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

| | | | | |
|--|--|--|-------------------------------------|--|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CC BY-NC-ND)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fsc@korea.kr |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
|--|--|--|-------------------------------------|--|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세부추진방안 ③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신용조회업에서 금융분야 핵심 데이터 산업으로-

2018. 11.

금 용 위 원 회

목 차

| | |
|-------------------------------|----|
| I. 추진 배경 | 1 |
| II. 신용정보산업에 대한 평가 | 2 |
| <참고1> 현행 신용조회회사(CB사) 현황 | 3 |
| <참고2> 신용정보집중기관 현황 | 4 |
| III.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 5 |
| 1. 혁신적 신규 Players 출현 유도 | 6 |
| 2. CB사에 빅데이터 업무 허용 | 10 |
| 3. 신용정보산업 인프라 정비 | 11 |
| 4. CB업 책임성·투명성 제고 | 13 |
| IV. 향후 추진계획 | 14 |

I. 추진 배경

□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경제 전환을 위한 규제 혁신을 추진

○ 대통령 주재 「데이터 경제 활성화 현장방문(8.31일)」 행사 등을 통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 ①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 및 활용범위, 데이터 결합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 ② 정보보호 관련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여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조화
- ③ 정보보호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등 정보보호 법률간 유사·중복 규제 정비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정 추진

* 11.21일 당정협의를 개최(당 :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무위 행안위·과방위 위원장 등, 정 : 최종구 금융위원장, 방통위·행안부 등 참석)

□ 금융위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혁신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가과제를 마련

- ① 신용점수제 도입, 평가의 객관성·투명성·책임성 강화,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권 등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 (1월)
- ②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3월)
- ③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프로파일링 대응권, 금융권 정보활용 상시평가제 등 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5월)
- ④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방안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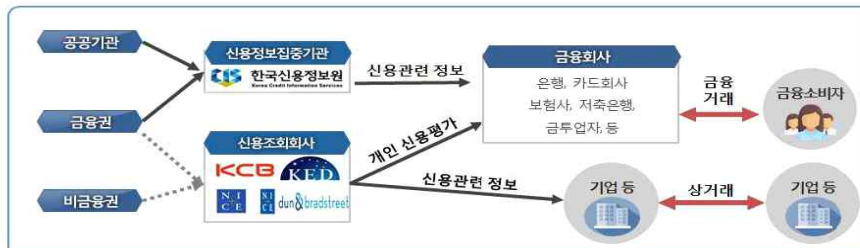
○ 특히, 신용정보산업을 선진화 방안을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11.1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II. 신용정보산업에 대한 평가

- 신용정보산업이란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유통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의미
- 국내 신용정보산업은 신용정보 사업자로서의 신용조회회사(CB: Credit Bureau)와 인프라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구성
 - 신용조회회사(CB사)는 개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제공·관리하고, 금융거래 등을 위해 신용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
 -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여 CB사·금융회사 등과 공유

< 신용정보산업 및 신용정보 관리·유통 체계 >



- '09년 도입된 현행 신용정보산업 체계는 데이터 혁신을 주도하기에는 규제, 업무범위, 인프라 측면 등에서 한계
 - ① (진입규제) 산업분류와 허가단위 등이 체계적이지 않아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새로운 Player의 출현을 저해
 - ② (업무범위) 해외에서는 CB사가 빅데이터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국내 CB사는 빅데이터 관련 업무 수행이 제약
 - ③ (정보인프라) 금융권에 공유되는 정보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인프라기관으로서 보다 다양한 금융권 지원기능이 요구됨
 - ④ (국민신뢰) 신용평가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산업의 책임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

참고 1 **현행 신용조회회사(CB사) 현황**

- 현재 총 6개 신용조회사가 CB업을 영위 중으로 실제 영위하는 업무에 따라 개인CB사와 기업CB로 구분 가능
 - (개인CB) 금융거래 정보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등급을 산정하여 금융회사에 여신심사 등 금융거래의 기초자료를 제공
 - 현재 3개의 신용조회사*가 개인CB업무를 영위
 - * NICE평가정보, KCB, SCI평가정보
 - (기업CB) 기업의 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신용등급 산정하거나, 기술신용정보 등 다양한 기업정보를 조사·수집하여 제공
 - 현재 5개의 신용조회사*와 1개의 신용조사회사**가 있음
 - * NICE평가정보, KED, 이크레더블, NICE디앤비, SCI평가정보
 - ** 한국 TDB신용정보 (일본기업 관련 신용조사업무 수행)

< CB사별 현황 비교('17년말) >

| 구 분 | 나이스 디앤비 | 나이스 평가정보 | SCI 평가정보 | 이크레더블 | KCB | KED | |
|------------|----------|----------|----------|--------|---------|---------|-------|
| 회사설립일 | 02.10.12 | 85.2.28 | 92.4.23 | 01.8.6 | 05.2.22 | 05.2.22 | |
| 자본금 | 77억원 | 304억원 | 178억원 | 61억원 | 100억원 | 692억원 | |
| 주요업무 비중 | 신용조회 | 71.1% | 70.5% | 23.7 % | 100.0 % | 88.1 % | 82.5% |
| | 개인 | - | 61.9% | 5.4 % | - | 88.1 % | - |
| | 기업 | 71.1% | 8.6% | 18.3 % | 100.0 % | - | 82.5% |
| | 모형판매 | 1.8% | 8.2% | - | - | - | 9.6% |
| | 개인 | - | 4.1% | - | - | - | - |
| | 기업 | 1.8% | 4.1% | - | - | - | 9.6% |
| | 본인인증 | - | 7.0% | 18.6 % | - | 8.5 % | - |
| | 기 타 | 27.1% | 14.3% | 57.7 % | - | 3.4 % | 7.9% |

참고 2 신용정보집중기관 현황

-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회사·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여, 이를 금융회사·CB와 공유하는 공적(公的) 정보인프라
 - CB와 달리, (i) 신용등급 등 새로운 신용정보를 생산하지 않고, (ii) 수집·관리하는 원천정보(Raw data)만을 (iii) 금융권에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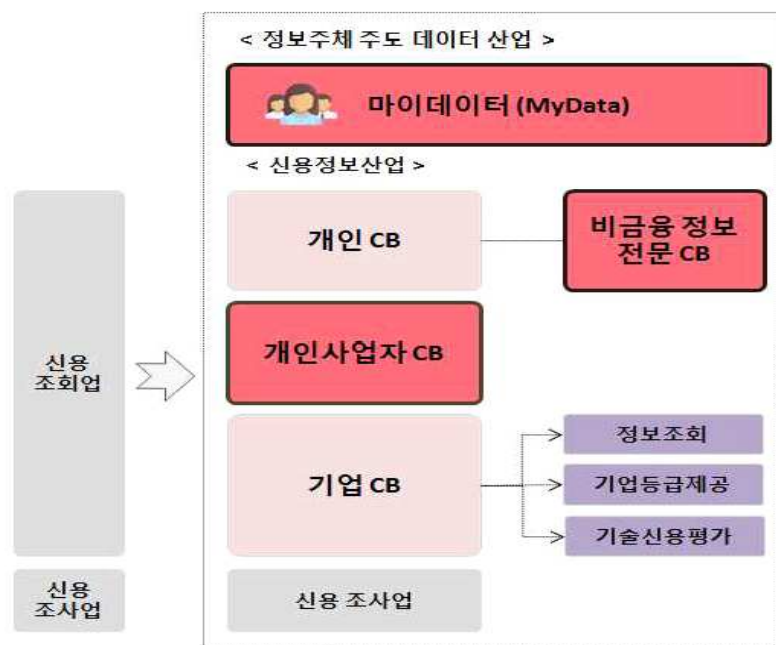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수집대상 정보

- ① 금융회사(대부업자 포함) : 금융거래실적·연체·상환·대위변제·부도정보 등
- ② 신복위·행복기금 : 채무재조정·상환 실적 등
- ③ 공공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 등) : 세금·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임금체불정보
- ④ 법원 : 개인회생·파산 정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 등

-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이하 "신정원")이 금융위 허가를 받아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수행 중
 - (개요) 5개 금융협회* 및 보험개발원의 신용정보업무를 승계 받아 '16.1월 통합출범
 -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 (성격)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으로 '15.12월부터 「신용정보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아 업무 중
 - (내용) 신용정보 집중관리·제공 외 다양한 관련 업무를 수행
 - 기술신용평가(TCB) 도입과 함께 ①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업무, ②빅데이터 등의 분석·제공 업무(컨설팅)
 - CB사가 기존에 수행해왔던 ③주소변경 통보대행업무 등도 수행

III.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 ◆ 마이데이터 산업,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등 새로운 혁신적 Players의 출현을 위해 진입규제를 체계적 정비



- ◆ CB산업을 고부가가치 데이터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CB사에 빅데이터 관련 업무가 가능하도록 함
- ◆ 산업 건전성 확보를 위한 책임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고, 신용평가체계의 정확성·공정성 검증을 통해 금융이용자 신뢰 제고
- ◆ 금융권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 등 신정원의 기능을 확충하여 신용정보산업 인프라 선진화

1 혁신적 신규 Players 출현 유도

가.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 7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참고

- 금융권은 개인신용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있으나, 개인은 자기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실정
 - 금리인하 요구, 신용평점 상승을 위한 정보정정청구 등 개인의 정보주권(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활용도 활발하지 못함
- 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을 도입

①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일괄조회·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신설

유럽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18.5)의 **정보이동권** (Right to Data Portability) 및 PSD2(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 '18.1)의 **계좌정보서비스제공업**(AISP, 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제도 국내 도입

- 개인의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를 통해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가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함
 - 최소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은 적용하지 않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여 경쟁과 혁신 촉진
- ②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보 관리를 돕고,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
-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정보정정청구 등 정보관련 권리의 대리 행사 업무, 투자자문·일임업, 금융상품자문업 등을 허용
- ③ 정보보호·보안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 *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은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이 없는 방식으로 설계
 - ** 강력한 본인인증 절차, 정보유출에 대응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 금융회사 및 CB사 중심으로 관리·활용되던 신용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되돌려주는 기반 마련

나. 개인사업자 CB사(SOHO CB) 도입

- 개인사업자 대출*은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가 미비

* 개인사업자는 총 663만명(18.7말)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은 598.4조원(17년말)

- 금융회사는 정확한 위험관리가 어렵고, 신용판단에 기초하기 보다는 보증·담보 등에 의존하여 대출하는 관행
-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보다는 담보확보가 용이한 부동산·임대업자 등에 대출이 쏠림

|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대출의 61%가 고신용차주 | (금감원, '17년)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상공인 대출의 82%가 보증·담보기반 | (중기부, '17년)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사업자의 4.3%에 불과한 부동산·임대업 대출비중이 30.0% | |

-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CB사를 새롭게 도입

① 개인사업자 CB업을 신설하여, 신규 CB사의 진입을 허용

* 자본금은 개인CB업에 준하여 최소 50억원으로 설정할 계획

- 공공분야 보유 개인사업자 정보의 공유 확대 추진

②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는 개인사업자 CB업 경영 허용

* 카드사는 가맹점별 상세 매출내역, 사업자 민원·사고이력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의 성장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가능

- 카드사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결과를 은행 등 금융권에 제공하거나 자체 내부심사 모형에 활용

-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행위규제 마련

* 상거래관계가 있는 자와 아닌 자를 차별하는 행위 금지, CB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강요 금지 등

-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등에 대한 효율적 자금배분을 지원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

다. 비금융정보 전문 CB 도입

- 현재 개인신용평가는 대출·카드 등 금융정보 위주로 이루어져 금융이력이 부족(thin-filer)*한 경우 신용평가가 어려움

* 최근 2년내 카드·대출이용 실적이 없는 국민이 **1,107만명**(16년말, NICE)

- 개별 CB사 차원에서 비금융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 기준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활용도도 낮음

* 예 : 일부 리스·렌탈업체로부터 고객 체납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나, 특정업체 정보만이 활용되어 신용평가의 정확성·공정성 저해

- 비금융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비금융정보 전문 CB사 도입

- ① 비금융 개인신용정보(통신·전기·가스 요금납부, 온라인 쇼핑 내역, SNS정보 등)만을 활용하여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CB사 도입

- ☑ 美 FICO : 통신료·공공요금 납부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위험 측정모형을 개발하여 약 1,500만명의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신용점수를 새롭게 산출
- ☑ 美 Lenddo : SNS 친구, 포스팅 등 260억개의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하여 개인신용평가를 실시

- ② 비금융정보 전문CB사에는 자본금 요건을 낮추고(최소 50억원→5/20억원)하고 금융기관 출자의무(50%)도 배제하여 진입규제 완화

| | |
|--|---------|
| 통신사 등이 업무를 통해 취득한 통신료 납부내역 등 대량으로 수집된 정형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 최소 20억원 |
| 그 외 SNS분석 정보 등 비정형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 최소 5억원 |

- ③ 기존 CB사와 동일한 정보보호 규제를 적용하고,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행위규제 정비*

* 예: 계열회사 고객의 신용평점을 높게 평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 금지

- ➔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적 신용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사회 초년생, 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

- 금융이력이 적더라도, 통신료·유틸리티 사용료 등을 성실히 납부한 경우, 신용평점이 개선되어 금융거래조건이 개선

라. 진입규제 정비

□ 마이데이터 사업자, 개인사업자 CB, 비금융정보CB 신설과 함께 CB산업 허가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

① CB업 허가 단위를 업무 실질에 따라 개인CB(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CB, 기업CB(기업신용조회업)로 구분

| | 개인 CB | 개인사업자CB | 기업CB |
|------|-------------|--------------|------------------|
| 처리정보 | 개인 신용정보 | 개인사업자 신용정보 | 기업 신용정보 |
| 활용목적 | 여신 등 금융거래 | 여신 등 금융거래 위주 | 금융거래, 상거래 |
| 평가방식 | 통계모형 등 정량평가 | 통계모형 등 정량평가 | 주로 정성적 평가 |
| 자본금 | 최소 50억원 | 최소 50억원 | 최소 50억원 → 5/20억원 |

② 업무내용이 다양한 기업CB업은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TCB)으로 세분화

[정보조회] 기업신용정보를 수집·통합·분석·가공하여 조회자에게 제공
 [기업등급제공] 기업·법인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을 생성·제공
 [기술신용평가] 기업의 기술가치 등을 평가하여 기술신용정보를 생성·제공

③ 상대적으로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기업CB업*은 허가단위별 규제 필요성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합리적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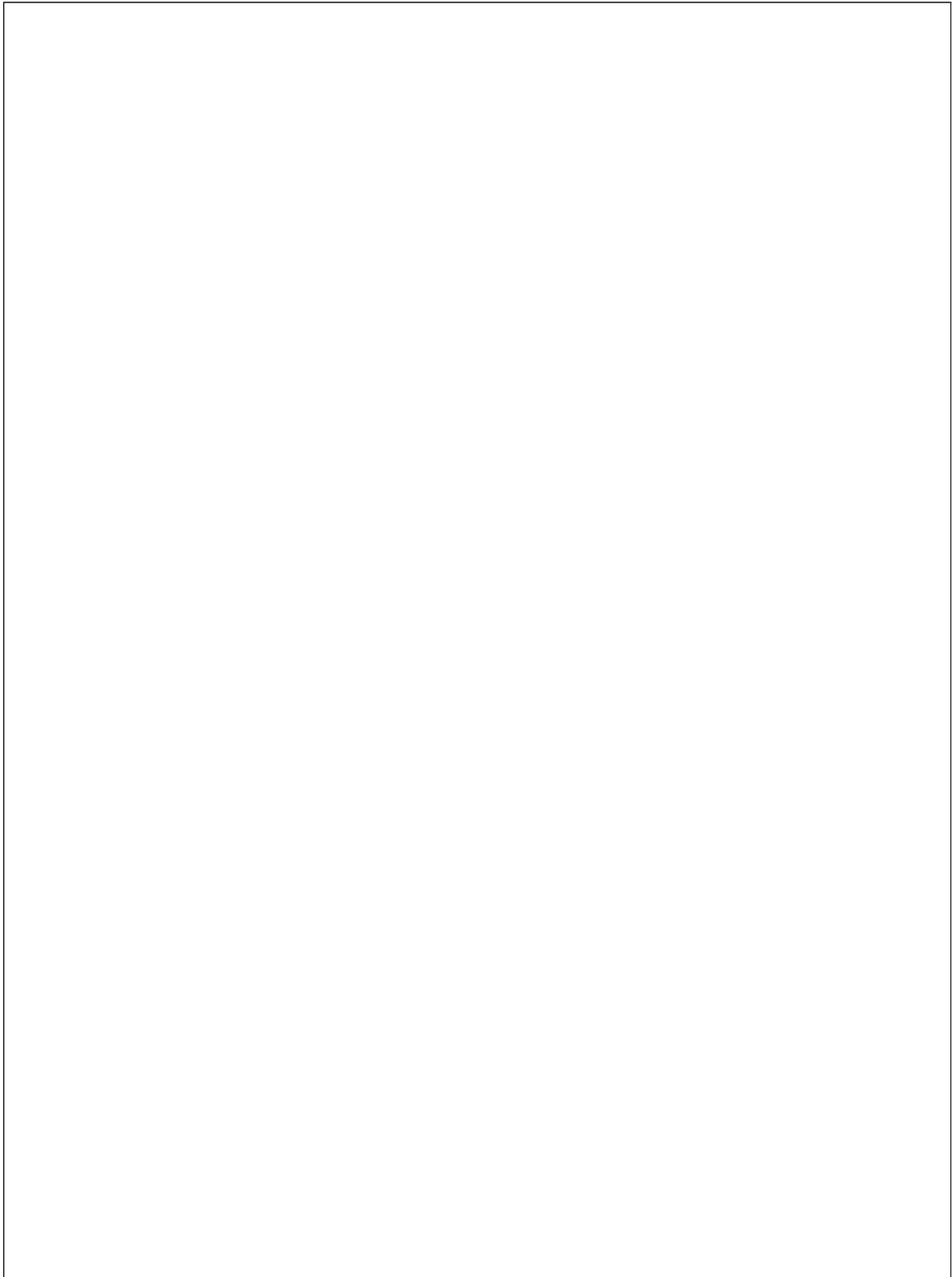
* 기업간 자금증개, 상거래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로서 (개인CB와 달리) 데이터의 증개·제공이 중요

| | 현행 | 기업등급제공, 기술신용평가 | 정보조회업 |
|--------------|--------|----------------|-------|
| 최소 자본금 | 50억원 → | 20억원 | 5억원 |
| 금융권 출자(50%↑) | 적용 → | 적용 | 배제 |

- 기업등급제공, 기술신용평가 업무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력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국내외 신용평가사 등의 진입은 당분간 제한

④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신용평가업(TCB)의 경우 특허 법인·회계법인 등의 신규 진입도 적극 유도

➔ 업무실질에 맞는 허가단위 운영을 통해 산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신규 Players 진입을 통한 산업 내 경쟁과 혁신 유도



3 신용정보산업 인프라 정비

가. 금융권 정보공유 확대

- 신용정보산업 내에서 집중·공유되는 정보범위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정보인프라로서의 완결성이 부족
 - 이에 신용평가결과의 정확성이 부족하고, 금융권 정보공유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과잉대출을 받는 등의 사례도 일부 상존
 - ☑ 차주의 총제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대부업 정보는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아 대부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DSR 규제를 넘어 은행권 대출이 가능
-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금융권 공유 확대 추진
 - ① 공공정보의 경우 조세체납 등 부정적 정보만 공유되고 있으나, 세금·사회보험료 성실납부 이력 등 긍정적 정보도 공유 필요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필요한 주요 공공정보도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 * 공공데이터 공개·활성화 차원에서 국세청·행안부·복지부 등과 협의 중
 - ② 금융정보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금융권에 공유**
 - 기존에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았던 대부업 정보*, 보험약관 대출 정보 등을 소금융권에 공유('19.上~)
 - * 현재는 CB사,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 ↔ 대부업간에만 관련 정보가 공유
 - 다만,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병행
 - * 예: 대부업 거래 정보 등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없이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조건(가산금리 등) 등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
- ➔ 균형있고 다양한 정보수집을 통해 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체계 등 금융권 위험관리 고도화

나. 신용정보원의 공공인프라 기능 확충

- 정보산업의 인프라기관인 신정원은 신용정보 집중관리·제공 외의 금융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기능도 제고할 필요
- 신용정보산업 지원을 위한 신정원의 공공인프라 기능 확충
 - ① 신정원,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데이터 결합, 금융회사 등의 익명조치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부여
 - * 금융회사의 익명조치가 추가정보를 활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검증, 검증 후 익명정보로 추정
 - 신정원·금융보안원의 데이터 활용·분석·관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② 데이터시장 조성을 위해 빅데이터 DB·분석시스템* 구축하고 중소형 금융회사 및 창업·핀테크기업의 데이터활용 지원
 - * 신정원,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정보를 비식별조치한 뒤 표본DB 또는 맞춤형 DB화하여 제공하거나, 신정원 내 분석도구·보안체계를 활용하여 자신이 보유한 DB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
 - ③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여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함
 - * 본인의 금융권 채무에 대한 채권자 변동이력 등을 일괄조회하는 시스템
 - 조회대상 채무*를 개인사업자 채무 등까지 폭넓게 확대
 - * (현행) 개인 대출채무 → (개선) 개인·개인사업자 대출채무, 카드결제 대금·보험계약 대출, 신보·SGI 등의 대위변제 구상채무 등
 - 본인에 한해서는 장기간* 채권자 변동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 금융권에 공유되는 정보와 분리보관함을 전제로 정보보유기간 제한 없이 채권자 변동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신설
- CB사 등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예: 주소변경 통보 대행 업무)는 민간구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진적 축소·폐지

4 CB업 책임성·투명성 제고

- CB업은 금융거래 등에 기초가 되는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등 국민의 경제·금융생활에 영향력이 큰 산업
 - CB산업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및 영업행위 규칙을 강화할 필요
- CB사의 지배주주 변경승인, 임원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규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
 - 개인신용등급 산정 등으로 영업의 책임성 확보 필요성이 특히 높은 개인 CB사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자격심사제도*도 도입
 - *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에 대해 2년마다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심사하여 미충족시 의결권 제한 등 조치
- 정확하고 공정한 신용평가를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 마련
 - ① CB사가 신용평가지 준수해야 하는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
 - * 예 : (개인CB) 성별·학력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금지
(기업CB) 계열사 상품 등의 구매 등 강제 금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 ② CB사가 신용평가체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신용정보원에 설치된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부터 심의받도록 함
 - 학계, 전문가,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평가모형, 민원 및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
 - * 평가 기초정보의 공정성 및 정확성,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및 안정성, 신용교육 등 소비자 지원 방안 등
 - CB사는 지적사항을 평가체계에 반영하도록 하여 신용평가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함
- ➔ CB사의 책임성, 신용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신용정보 산업 및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금융이용자 신뢰를 제고

IV. 향후 추진계획

1 추진일정

- 11.15일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동 방안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 경주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또는 법 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추진

2 추진과제별 상세일정

| 과 제 | | 일 정 | |
|--|-------------------|-------------------|--------------------------------------|
| 마이데이터, 비금융정보 전문CB, 개인사업자 CB 등 혁신적 신규 Players 출현 유도 | | ■ '18년 중 「신정법」 개정 | |
| CB사에 빅데이터 관련 업무 허용 | | ■ '18년 중 「신정법」 개정 | |
| 신용정보산업 인프라 정비 | 금융권 정보공유 확대 | 공공정보 등 공유 확대 | ■ 국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 ■ '18년 중 「신정법」 개정 |
| | | 금융권 정보공유 사각지대 해소 | ■ 「신정법」 하위법령 개정 ■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
| | 신정원 기능 확충 | 데이터 전문기관 역할 수행 | ■ '18년 중 「신정법」 개정 |
| | | 빅데이터 DB·분석시스템 구축 | ■ '19년 상반기 시행 예정 |
| | | 채권자변동조회 시스템 확대 개편 | ■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 '18년 중 「신정법」 개정 |
| CB업 책임성·투명성 제고 | 지배구조·영업행위 규제 도입 | ■ '18년 중 「신정법」 개정 | |
|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설치 | ■ '18년 중 「신정법」 개정 | |

MEMO
